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(시행 2018. 1. 1. 법률 제15335호)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,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을 군 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(안 제11조)

- 「지방세법」에서 군 지역은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에서 제외함

나.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·징수 금액을 상향조정함(안 제14조)

-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 : 10만원 → 20만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세법』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1747('18.2.28)〕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13062('18.3.2)〕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 : '18.3.2~ '18.3.22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 부과·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「지방세법」에서 군(郡) 지역은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에서 제외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중과대상지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/2씩 부과 징수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는 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준액을 20만원으로 변경하기 위

함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납세자의 편의 및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